

문서번호	여성가족과-12 52
결재일자	2016.1.1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보육지원2팀장	여성가족과장	주민생활국장
김도형	주달순	김기운	01/12 강대형
협 조			
	보육지원1팀장	정진숙	

2016년 어린이집
지도점검 추진계획

2016.1.12.

강 북 구

2016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

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·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I 추진 개요

추진근거

○ 영유아보육법 제41조(지도와 명령)

- 어린이집 설치·운영자,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.

○ 영유아보육법 제42조(보고와 검사)

-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 및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.

점검기간 : 2016년 1월 ~ 2016년 12월

점검대상 : 관내 모든 어린이집(연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원칙)

구 분	국·공립·법인등	민간	가정
총 193개소	32개	87개	74개

II 추진방향 및 중점점검 사항

추진방향

- 사전 예방적 점검 강화 : 전체 어린이집 자체 사전 모니터링
- 시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능한 중복점검을 방지하며 지적사항 소명절차 등을 안내하여 어린이집과 소통하는 점검을 실현
- 시기별 시의성있는 점검으로 점검의 효율성 및 파급효과 강화
- CCTV 설치의무화에 따라 설치여부 확인 등

□ 중점 점검사항

연번	항 목	확 인 사 항	비 고
1	원 장	- 불시 점검 시 원장 근무(겸임 제한) - 근무시간 준수 여부(8시간 이상 근무) -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대가성 강의, 발표 등 여부	
2	급·간식	- 유통기한 경과(미표기) 식자재 보관 여부 - 식단표 준수 여부, 1인당 급간식비 지출금액 확인	
3	운영시간	- 주6일 월~금 12시간, 토요일 8시간 운영시간 준수여부	
4	운영위원회	- 5~10명 구성 및 부모위원 1/2이상 여부 - 분기별 1회 이상 회의개최 여부	
5	장부 등	- 근로계약서, 근무상황부, 보육료 대장, 비품대장, 급여대장, 공사대장 등 비치여부	
6	보육교직원	-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육교직원과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일치여부 - 근로계약, 시스템 등록 자료와 실제 근무시간 확인	
7	아 동	- 보육통합에 등록된 아동과 실제 보육아동 일치여부	
8	출석부	- 병결 등 서류 비치여부, 출석부 기재 여부	
9	특별활동	- 계약서, 동의서, 운영시간 준수 등	
10	수입관리	- 모든 수입이 한 계좌로 입금처리 되는지 여부 - 출석부를 근거로 보육료(기본보육료) 구간결제 준수여부 ※ 결석체크가 없는 경우 특정일 CCTV 확인	
11	지출관리	-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 지출 여부 - 적정 지출증빙서류 첨부여부	
12	필요경비	- 필요경비 수납 상한선 준수여부 - 반기별 정산 및 공지여부	
13	위생	- 보육실, 주방, 화장실 청결 여부, 정기소독 실시여부 등	
14	입소	- 입소신청자명부 비치 -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- 입소우선 증빙서류 비치여부	
15	휴원	- 휴원 절차 준수 여부 - 당직 교사 배치 여부	
16	차량	- 통학차량 신고 - 차량 등하원일지 작성(차량기사 면허증 소지 확인란)	
17	안전	- 안전공제회 가입여부, 안전점검표 확인, 소방점검 및 소방훈련 서류 확인	
18	CCTV	- 설치여부 - 작동방법 숙지여부 - 60일 이상 보관 여부	

※ 부실 운영시설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

III

세부 추진계획

□ 정기 및 수시(긴급) 지도점검

- 점검방법 : 보육지원1,2팀 직원 2인~3인 1개조 편성 지도점검
-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사실 통보
 - 정기점검 : 지도점검 7일전까지 해당 시설에 서면으로 통보(원칙)
 - 수시점검 : 민원신고, 제보, 부정의심 시설 등 점검 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때에는 현장에서 구두 통보 가능
- 정기점검 제외 대상 시설 사전 통보
 - 대상시설
 - '15년 정부 평가인증 확인 점검 결과 95점 이상 시설
 - '15년 서울형 재평가 결과 상위 5% 중 클린운영분야의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
 - 정기점검 전 민원신고로 점검을 받은 시설
 - ※ 단, 민원제보·언론보도 등 문제발생시 적용 제외
- 어린이집 지도점검표 : 붙임2(서울시 중점 점검항목 확정 후 양식 변경 가능)

□ 특별(기획) 지도점검 및 자치구 교차 지도점검

- 점검대상 : 민원제보 또는 보건복지부·서울시 계획에 의거 선정
- 점검방법
 - 특별(기획) 지도점검 :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시 직원과 합동점검
 - 자치구 교차 지도점검 : 서울시 추진계획 수립에 의거 타 자치구와 합동점검

□ 국공립·서울형어린이집의 점검 차별화

- 회계분야(최근 3년) 점검 강화
 - 보조금 지원이 많은 시설이므로 회계분야 중점 점검
 - 어린이집 운영계좌 입출금 내역 및 이체내역 확인
 - 기타운영비(적립성 보험료 포함), 퇴직금, 공사비 지출내역 확인
- 입소우선순위 및 운영시간 준수여부 확인 철저
 - 입소우선순위 준수, 입소신청자 명부 및 입소우선증빙서류 비치 확인
 - 어린이집 운영시간 준수여부 확인 등

V

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

- 지도점검 결과 위반시설은 엄정한 행정처분 및 점검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
 - 조치내용 : 신분상 조치(보육교직원 자격취소·정지, 고발 등)
재정상 조치(보조금 환수), 행정상 조치(시정명령 등)
 - 추진방법
 - 적발된 비리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엄정한 조치
 - ▷ 모범어린이집, 서울형 지정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지적사항 발생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로 사후관리 강화

V

행 정 사 항

-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보육교직원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후 정책반영
- 지도점검 실적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

붙임 : 1. 어린이집 자체점검표 1부.
2. 어린이집 지도점검표(2016년) 1부. 끝.